

「任那の調」와 「任那使」

- 「任那の調」관련사료의 재검토 -

나행주*

hjoona@hanmail.net

Contents

- I. 서 언
- II. 종래설의 문제점
- III. 왜 왕권과 「임나사」 및 「임나의 조」
- IV. 결 어

Abstract

本稿は、「任那の調」に関する日本学界の通説的理解に対する批判作業の一環として、特に「任那の調」の史的意義を追求するにおいて、いわゆる「任那使」の存在をその前提として理解してきた従来の通説及び新説の考え方について、その問題点を関連史料である推古紀三十年各条の分析を通じて明らかにし、かつその可否を具体的に検証してみたものである。

言うまでもなく、「任那の調」の問題においていわゆる「任那使」との関連を何よりも重視する日本学界の傾向は、石母田正氏の提起したいわゆる「東夷の小帝国・小中華」論の多大な影響力と深く関わるものである。つまり、日本古代史学界では今現在においてもなお、日本古代国家の特質及び対外関係性の性格を論じる際、まず持って、いわゆる「東夷の小帝国・小中華」論に基づいた研究がその主流を占め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本稿の検討結果からすると、いわゆる「任那使」の存在を前提として、「任那の調」の史的意義を追究してきた、石母田正説に基づいた従来の理解の仕方は、史料的根拠を全く持たない、いわば砂の上の楼閣のような、脆弱な土台の上での論議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したがって、今後における「任那の調」の理解は、従来とは異なる視点・観点から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少なくとも、いわゆる「任那使」の存在を重視するイデオロギー的・儀礼的側面に一貫する立場からは、一応、離れるべきであろう。と同時に、「調」という「日本書紀」編者らの意識が色濃く投影された、律令用語からの解放も切に望まれるところである。

Key Words : 「任那の調」、いわゆる「任那使」、推古紀三十年条、倭王権、「東夷の小帝国・小中華」論

* 대전대학교 일본학과 강의교수

I. 서 언

종래 「임나의 조」에 대한 일본학계의 통설적 이해는 주로 (1)「임나의 조」의 역사적 유래 및 시기적 기원의 문제에 대한 추구, (2)「임나의 조」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의 문제, (3)신라 혹은 백제가 왜 왕권에 「임나의 조」를 제공·납입하는 이유·목적에 대한 해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검토가 행해져 왔다).

그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 (3)의 문제와 관련,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씨와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씨의 학설²⁾에 기초한 통설적 이해에 있어서 「임나의 조」는 왜 왕권의 임나 즉 가야지역 전체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임나(가야 제국)의 최종적인 멸망 후 가야지역을 병합한 신라 혹은 백제가 임나영유 즉 그 지배권을 인정받는 代償으로서 왜 왕권에 「임나의 조」를 납입할 국제적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왜 왕권이 신라 혹은 백제가 제공한 「임나의 조」를 수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다른 아닌 양국의 임나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국제적 승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3)의 「임나의 조」의 의의에 대해서는,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는 과거 임나지역에 대한 지배사실의 상징이자 동시에 명목상으로 과거에 멸망한 임나가 재흥, 부흥했다는 표현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 제국에 대해 소위 동이의 소재국으로서 군림하는 6-7세기 현재의 왜국의 위치를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상에 다름아닌 것이다.

다만, 종래의 통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스즈키 히데오(鈴木英夫)설³⁾로 대표되는 근년에 제시된 신설들⁴⁾에서는 「임나의 조」의 역사적 기

-
- 1) 종래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金鉉球(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제2편 제3장, 吉川弘文館, 鄭孝雲(1995) 「임나의 조」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学研文化社, 延敏洙(1998) 「일본서기의 「임나의 조」 관계기사의 검토」 『古代韓日關係史』혜안(初出은 1992), 羅幸柱(2005)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任那問題와 韓日關係』韓日關係史研究論集 3, 景仁文化社 등을 참조.
 - 2) 末松保和(1949) 『任那興亡史』 제8장, 吉川弘文館, 石母田正(1971) 『日本の古代国家』 제1장, 岩波書店(후에 『石母田正著作集』 제3卷, 岩波書店, 1989에 수록. 아울러 본고에서의 이시모다설에 대한 언급 및 인용은 후자에 의함).
 - 3) 鈴木英夫(1996)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古代の倭国と朝鮮諸国』, 青木書店(초출은 1983).

원·유래를 통설과 같은 직접적인 임나지배나 혹은 간접지배가 아닌, 백제의 대외외교에 대한 대항책 즉 대백제견제책으로서의 신라 외교정책의 일환인 대외정책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소위 왜 왕권의 임나지배를 전제로 한 통설의 모순점을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이점이야말로 통설과 다른 신설의 최대의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일본학계의 「임나의 조」이해에 있어서 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통설이나 신설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이해상의 대전제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 「임나의 조」의 소위 임나의 실체에 대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는 가야제국 중 금관국 즉 김해의 금관가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①), 둘째,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의 의미 즉 사적의의와 관련하여 「임나사」의 존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②)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과연 일본학계의 이러한 이해가 성립되는지,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에 관한 검토는 비단 일본학계의 「임나의 조」이해가 지닌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나의 조」의 실체 해명, 즉 「임나의 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학계의 「임나의 조」와 관련한 종래의 논의 자체가 마치 사상누각과 같은 취약한 전제·기초 위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전 별고를 통해서 「임나의 조」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서 「임나의 조」정책의 시기적 기원 문제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재검토, 신라 측에서 본 「임나의 조」제공 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통설 및 신설의 이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⁵⁾. 나아가 그러한 검

4) 여기서 신설이란 1980년대 이후에 제시된 연구로 鈴木英夫(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国史学』119, 山尾幸久(1989) 『『任那の調』の実態と性質』 『古代の日朝関係』, 塙書房, 西本昌弘(1990) 『倭王権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129 등에 제시된 제씨의 견해를 칭한다.

5) 羅幸柱(2008a)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 『韓日關係史研究』29

토결과를 전제로 「임나의 조」의 문제를 단지 왜국 지배자층에 있어서의 관념이나 명목적인 문제가 아닌 극히 현실적인 570년대 敏達朝의 왜 왕권에 있어서 대신라 외교정책으로서 입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소위 「임나의 조」정책은 왜 수립되었는지, 즉 「임나의 조」정책의 의의와 본질·목적에 대해 해명을 시도한 바 있다⁶⁾.

본고도 또한 필자가 지금까지 행해온 일본학계의 「임나의 조」이해(통설 및 신설)에 대한 비판 극복작업의 일환이자 그 연장 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종래 일본학계의 이해에 있어서 재고를 요하는 상기한 두 가지 전체의 문제점을 관련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그 가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단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후자(②)인 「임나사」에 관련한 문제에 한정해 검토하고, 전자(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기회를 달리하기로 한다.

II. 종래설의 문제점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의의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가 지니는 史的 의의의 문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종래 무엇보다도 중시되어 온 하나의 요소가 다름아닌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 그 자체이다.

즉 종래의 통설적 이해에서는 신라·백제에서 왜 왕권 측으로 제공된 소위 「임나의 조」납입·공진에는 단지 「임나의 조」라는 물건·물산만으로는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소위 「임나사」의 존재(사람 즉 專使)야말로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임나의 조」와 소위 「임나사」가 하나의 세트라 갖추어져야 비로서 하나의 의미를 이룬다고 이해하고 있다.

요컨대 신라·백제로부터 왜 왕권으로의 「임나의 조」납입·공진 시에는 반드시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가 불가결하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나의 조」에 관한 신설의 대표적인 논자의 한 사람인 스즈키(鈴木英夫)씨는 『日本書紀』推古天皇⁷⁾ 30년(622)是歲條 및 동년11월조, 孝德紀

6) 羅幸柱(2008b) 「「임나의 조」의 실체와 의미」 『日本歴史研究』27

大化원년(645)7월조 등의 관련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임나의 조』란 재물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위를 가진 『임나』사가 재물을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사자와 재물을 구비해야만이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이해한다⁸⁾.

또 「임나의 조」문제에 대해 종래와 다른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 니시모토 마사히로(西本昌弘)씨의 경우도 「임나의 조」에 있어서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를 중시하고 있다. 즉 니시모토씨는 「『임나사자』의 존재가 『임나부흥』의 열쇠였다」고 단정하고, 「왜 왕권은 왜국의 조정에서 『임나사인』에게 『임나의 조』를 공진 시킴으로써 의례적으로 『임나부흥』을 완수하고 諸蕃의 왕인 천황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의미부여하고 있는 것이다⁹⁾.

두 말할 것도 없이 스즈키, 니시모토 양씨가 제시한 이러한 이해의 전제에는 왜 왕권에 있어서 한반도제국으로부터 보내진 「임나의 조」의 공진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지니는 의식·의례적 성격의 강조, 즉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중시해 온 다음과 같은 긴 연구사상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종래 「임나의 조」의 史的 의의를 둘러싸고는 일찍부터 의식·의례적 측면이 주목되고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는 「명목적으로 임나가 미야케(관가)임을 의미하는 외교의례」로 본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씨의 이해¹⁰⁾를 그 효시로 하여 이후 「임나의 조」가 지니는 의례적 측면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해가 일본학계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설적 이해 형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현재의 학계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유명한 이시모다(石母田正)씨의 所說일 것이다. 즉 石母田씨가 제시한 「임나의 조」의 史的 의의를 둘러싼 의미부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학계의 통설적 이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시모다설에 의하면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란 다름아닌 「임나부흥」

7) 이하, 『日本書紀』의 각 천황에 관한 부분을 推古紀, 孝德紀 등과 같이 표기한다.

8) 鈴木英夫(1996) 『古代の倭国と朝鮮諸国』, 青木書店, pp. 239~240

9) 西本昌弘(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129, p. 3

10) 三品彰英(1971) 「聖德太子の任那対策」 『聖德太子論集』, 平楽寺書店.

을 의미한다. 즉 「임나의 조」는 조공국으로서의 임나가 부흥한 것의 상징이고, 동시에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임나를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취급하기 위한 하나의 擬制·儀式·形式¹¹⁾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라는 進調의식 그 자체는 한반도 제국을 附庸國으로 가진다는 왜 왕권 지배층들이 품은 소위 중화의식·중화사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례조치이다. 그리고 소위 「임나사」는 왜국 조정에 있어서 소중화·소제국 연출에 필요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말하자면 무대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귀중한 존재에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상을 요컨대 왜 왕권에 있어 「임나의 조」의 사적 의의는 신라·백제로부터 보내진 「임나의 조」를 왜 조정에서 專使인 소위 「임나사」로 하여금 직접 바치게 한다는 進調儀式을 행하는 행위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단순한 「임나의 조」라는 물·물산 그 자체의 收受·확보에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임나의 조」의 역사적 의의를 둘러싼 통설적 이해에서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를 하나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수긍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과연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의 사적 의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성요소인 것일까.

이 점의 가부를 우선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 이 점을 직접 신라·백제에서 왜 왕권에 증여·제공된 「임나의 조」사례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검토를 요하는 하나의 사례로 敏達紀 4년(575)6월조를 들 수 있다.

六月, 新羅遣使進調. 多益常例. 并進多々羅·須奈羅·和陀·發鬼, 四邑之調.

주지하는 것처럼 위의 사료는 「임나의 조」에 관한 조건사료로 주목되는데, 여기에는 신라 측으로부터 왜 왕권으로 보내진 최초의 「임나의 조」(「四邑의 調」) 제공·공진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1) 石母田正(1971), 전계서, pp.48~51

그런데 이 사례에서 무엇보다도 주의되는 것은 이 때 왜 왕권에 「四邑의 調」 즉 「임나의 조」를 進調한 것은 다름아닌 新羅使였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임나의 조」의 제공·진조에 있어서 신라사 이외의 「임나의 조」貢進을 위한 독자적인 專使로서의 소위 「임나사」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임나의 조」문제에 있어서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종래의 통설적 이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근본적인 연유인 것이다.

다만 이 575년의 「임나의 조」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石母田설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시모다씨가 제시한 「임나의 조」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에서는 575년의 단계에서는 아직 신라가 「임나의 조」를 代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독자의 소위 「임나사」에 의해 행해지는 「임나의 조」進調형식을 왜국이 신라 측에 의무화한 것은 推古朝에 들어서부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씨는 왜국이 600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대신라출병을 감행한 결과로서 이러한 「임나의 조」의 납입과 관련한 새로운 외교형식을 양국 간에 처음으로 확립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연 이 문제에 관한 한 石母田설은 언뜻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이해인 것처럼도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러한 石母田설이 제시한 「임나의 조」에 대한 이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씨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부여를 위한 전제로서 관련사료에 대한 해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시모다설은 자설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히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사료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위 「일본서기 사관(혹은 왜국중심사관)」에 충실한 스에마쓰설을 援用하거나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왜국의 신라출병을 전한 문제의 推古紀8년 是歲條¹²⁾의 이해에 있어서도 결

12) 是歲, 命境部臣為大將軍. 以穗積臣為副將軍. <並闕名.> 則將万余衆, 為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 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 惶之舉白旗, 到于將軍之麾下而立. 割多々羅 素奈羅 弗知鬼 委陀 南迦羅 阿羅々六城, 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強

코 예외는 아니다.

推古紀8년 是歲條의 이해를 둘러싸고는 가)이를 『日本書紀』의 기술 그대로 사실로 이해하는 末松說로 대표되는 사실설¹³⁾, 나)여기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일부 반영 혹은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미시나(三品彰英)설로 대표되는 일부 사실설¹⁴⁾, 그리고 다)기사 자체를 『日本書紀』편자의 조작 윤색으로 이해하는 김현구설로 대표되는 전면부정설¹⁵⁾ 등이 제기되어 있으나, 현재의 학계의 연구성과로 보아 다)설을 가장 타당한 이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관련사료에서 전하는 600년의 신라출병과 그에 따른 신라왕의 항복과 5성(6성)할양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해가 학계의 공통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해석과 관련한 이시모다씨의 이해, 즉 왜국의 600년에 있어서의 대신라출병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 위에서 그 결과로 왜 왕권과 신라 사이에 소위 專使에 의한 「임나의 조」납입이라는 형식·의무가 성립했다고 이해하는 씨의 학설은 사료해석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씨의 이해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 아닌 「임나사」와 관련한 문제인데, 과연 추고조에 이르러 처음으로 「임나사」의 존재가 왜 왕권 내부에서 외교상의 문제로 대두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위 「임나사」에 의한 「임나의 조」진조라는 외교의례·형식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시모다씨의 이해에는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專使(즉 소위 「임나사」)의 형식이 성립한 시기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사실 이 점은 「임나의 조」이해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왜 왕권으로부터 소위 임나로의 견사라는 사실이다¹⁶⁾.

擊不可. 則奏上. <하략>

13) 末松保和(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pp. 189~196

14) 三品彰英(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鄭孝雲(1995)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学研文化社 등.

15) 金鉉球(1985) 「任那調及び新羅征討に関する記事」 『大和政権の対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延敏洙(1998) 「일본서기의 ‘임나의 조’ 관계기사의 검토」 『古代韓日關係史』 혜안 등.

16) 『日本書紀』에 보이는 「임나의 조」와 관련한 신라 임나 혹은 백제 임나로 보내진 2국 동시견사 기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2008b), pp. 184~186 참조.

왜냐하면 왜 왕권으로부터 소위 임나로의 견사기사에 주목하면 石母田씨가 그 專使의 형식이 성립했다고 하는 推古朝 이전 시기에 이미 왜 왕권 측에서 소위 임나에 견사하고 있는 것이 사료상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敏達紀 4년4월조가 보여주는 것처럼¹⁷⁾ 敏達朝 575년의 시기에 있어서 왜 왕권은 소위 임나에 견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임나의 조」를 둘러싸고 敏達朝의 왜 왕권에서는 신라로의 견사뿐만 아니라 소위 임나로의 견사도 동시에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중시하면 역시 600년 이전 시기인 이 575년의 단계에 있어서도 이미 「임나의 조」문제와 관련해서 왜 왕권 내부에서는 통설에서 말하는 바의 소위 「임나사」의 존재에 크게 구애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왜 왕권의 지배자층은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임나의 조」와 관련해 왜 왕권으로부터 遣新羅使와 구별되는 독자의 소위 임나로의 견사 즉 遣任那使의 파견은 신라로부터 파견된 신라사가 아닌 임나로부터의 소위 「임나사」 즉 「임나의 조」진조를 위한 專使의 來倭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575년 6월에 보이는 신라 최초의 「임나의 조」제공은 동년 4월의 왜 왕권이 행한 임나에의 견사(「吉士木蓮子使於任那」)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575년에 있어서 신라에서 보내진 「임나의 조」의 경우, 왜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중대한 의미를 지닌 「임나사」라는 專使의 존재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곧 소위 「임나사」가 아닌 신라사 스스로가 직접 「임나의 조」를 進調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국으로서는 「임나에 관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任那之事, 今亦不成矣)」(推古紀30년 是歲條)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서 왜 왕권이 575년의 신라사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신라의 조를 둘러싼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임나의 조」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환하는(不納以還之)」(敏達紀9년6월조, 同11년10월조) 등

17) 敏達紀四年四月條에는 「庚寅, 遣吉士金子, 使於新羅. 吉士木蓮子使於任那. 吉士訖語彥使於百濟」라 되어 있다.

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왜 왕권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 575년 6월의 신라사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한 흔적은 사료상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컨대 600년의 신라출병의 결과로서 소위 「임나사」 즉 專使에 의한 「임나의 조」進調라는 새로운 외교의례상의 형식이 성립했다고 이해하는 石母田 설의 문제점이 분명해졌다고 여겨지는데, 나아가 동시에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문제는 반드시 소위 「임나사」라는 존재를 그 전제로 하여 의미부여 되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환언하면 「임나의 조」의 史的 的 의의를 둘러싸고 소위 「임나사」의 존재를 불가결한 요소로 전제하는 종래의 이해, 즉 「임나의 조」의 명목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측면만을 중시한 일본학계의 통설적 해석이나 의미부여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나의 조」의 史的 的 의의를 둘러싸고 「임나사」의 존재유무를 중시해 온 종래의 이해에서 그 사료적 근거로서 특히 중시하는 것이 다음의 두 사료이다. 즉 그 하나가 推古紀30년各條(<사료 a>)이고, 다른 하나가 孝德紀 大化원년 7월조(<사료 b>)이다.

이하 절을 바꾸어 두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래의 일본학계가 행해온 통설적 이해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로 한다.

Ⅲ. 왜 왕권과 「임나사」 및 「임나의 조」

우선 추고기 30년 각조(<사료 a>)의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인용사료가 상당히 장문이기는 하지만 논술의 편리상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사료상의 숫자나 부호는 모두 인용자에 의함).

<사료 a>

①秋七月,가)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任那遣達率奈末智,並來朝.仍貢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且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即佛像居於野秦寺.以余舍利金塔觀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나)是時,大唐學問者僧惠齋·惠光·及匡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於是,惠日等共奏聞曰,留于唐國學者,皆學以成業.應喚.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國也.常須達.

②是歲,가)新羅伐任那.任那附新羅.於是,天皇將討新羅.謀及大臣,詢于群卿.田中臣對曰,不可急討.先察狀,以知逆後擊之不晚也.請試遣觀其消息.中臣連國曰,任那是元我內官家.今新羅人伐而有之.請戒戎旅,征伐新羅,以取任那,附百濟.寧非益有于新羅乎.田中臣曰,不然.百濟是多反覆之國.道路之間尚詐之.凡彼所請皆非之.故不可附百濟.則不果征焉.나)爰遣吉士磐金於新羅,遣吉士倉下於任那,令問任那之事.時新羅國主,遣八大夫,啓新羅國事於磐金.且啓任那國事於倉下.因以約曰,任那小國,天皇附庸.何新羅輒有之.隨常定內官家,願無煩矣.則遣奈末智洗遲,副於吉士磐金.復以任那人達率奈末遲,副於吉士倉下.仍貢兩國之調.다)然磐金等,未及于還,即年,以大德境部臣雄摩侶·小德中臣連國為大將軍.以小德河邊臣弥受·小德物部依網連乙等·小德波多臣広庭·小德近江脚身臣飯蓋·小德平群臣宇志·小德大伴連<闕名.>小德大宅臣軍為副將軍.率數萬衆,以征討新羅.라)時磐金等,共會於津,將發船以候風波.於是,船師滿海多至.兩國使人,望胆之愕然.乃還留焉.更代堪遲大舍,為任那調使而貢上.於是,磐金等相謂之曰,是軍起之,既違前期.是以任那之事,今亦不成矣.則發船而度之.唯將軍等,始到任那而議之,欲襲新羅.於是,新羅國主,聞軍多至,而予懼之請服.時將軍等,共議以上表之.天皇聽矣.

③冬十一月,

가)磐金倉下等,至自新羅.時大臣問其狀.對曰,新羅奉命,以驚懼之.即並差專使,因以貢兩國之調.나)然見船師至,而朝貢使人更還耳.但調猶貢上.爰大臣曰,悔乎,早遣船師矣.다)時人曰,是軍事者,境部臣阿曇連,先多得新羅幣物之故,又勸大臣.是以,未待使旨,而早征伐耳.라)初磐金等,度新羅之日,比及津,莊船一艘,迎於海浦.磐金問之曰,是船者何國迎船.對曰,新羅船也.磐金亦曰,曷無任那之迎船.即時,更為任那加一船.其新羅以迎船二艘,始於是時歟.

그러면 이들 관련사료의 검토를 통해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와 소위 「임나사」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전개사료 ②의 是歲條(나)·다)·라)에 의하면 622년 왜 왕권이 신라·임나에 사자를 파견했고, 이에 신라 측으로부터 신라사와 함께 소위 「임나사」(「達率奈未遲」)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도중에 왜 왕권의 신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왜국으로 파견된 「임나사」가 관위가 보다 낮은 임나의 「調使」(「堪遲大舍」)로 교체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왜 왕권의 사자가 「이로써 임나의 일이 지금에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是以任那之事,今亦不成矣)」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동일사건의 異傳으로 이해되는 ③의 11월조에는 신라가 왜 왕권의 요청에 따라 「專使」에 의한 「兩國之調」를 보내기로 했는데 왜의 군사행동에 의해 「調」만 貢上되고 사자는 來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大臣馬子가 「悔乎,早遣師矣」라고 말하며 한발 빠르게 군사행동을 일으킨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상이 「임나의 조」의 의의를 둘러싼 종래의 통설적 이해에 있어서 소위 「임나사」의 존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료적 근거인데 후술하는 것처럼 해당사료에 대한 종래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다.

확실히 왜국의 사자가 「任那之事」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이유·원인을 다름아닌 사자의 교체(②의 라)에 있다고 이해하고 따라서 일정한 관위를 가진 사자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 이유를 調만의 貢上(③의 나) 즉 「임나사」그 자체의 부재에 있다고 보아 「임나의 조」에 관련된 專使의 존재를 강조하는 입장도 일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료적 해석을 바탕으로 왜 왕권의 지배지층이 「임나의 조」문제에 있어서 소위 「임나사」의 존재를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정 관위를 가진 專使의 존재를 전제로 그 史的 의의를 추구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니시모토씨는 吉士磐金 등이 「任那之事」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한탄한 데 대해 그 이유를 調만의 貢上 즉 任那人 사자가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씨는 「임나의 조」문제에 있어 소위 「임나사」의 존재는 불가결하며, 따라서 「임나사」의 존재유무는 왜 왕권에 있어서 말하자면 「임나부흥」의 열쇠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위 「임나사」의 존재를 중시해 온 종래의 이해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사료적 근거로서 주목되어 온 것이 孝德紀 大化원년7월조(<사료b>)이다.

<사료b>

丙子,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百濟調使, 兼領任那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 遇病留津館, 而不入於京. <중략>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 為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 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 觀察任那國界. 是故, 百濟王隨勅, 悉示其界. 而調有欠. 由是, 却還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하략>

예를 들면 스즈키(鈴木英夫)씨는 백제로부터의 「임나의 조」 제공·進調 사실을 전하는 전개사료에 보이는 「兼領任那使」에 주목한다. 즉 백제사가 소위 「임나사」를 「兼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중시하여 그 원인을 백제가 「임나의 조」를 보냈을 때 소위 「임나사」의 來朝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사료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 「임나의 조」에 있어서는 소위 「임나사」의 존재가 불가결하다는 이해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개의 사료에 대한 종래의 해석에는 몇 가지 검토를 요하는 점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선 <사료b>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확실히 해당사료에 보이는 백제사(왕)에의 詔에는 「임나의 조」에 대한 일종의 요구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즉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라고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일단 왜 왕권이 백제에 대해 백제의 調와 「임나의 조」의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하나의 요구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료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詔에 제시된 백제에 대한 왜 왕권의 요구조건 가운데 문제의 소위 「임나사」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임나의 조」와 백제의 調를 구별해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임나의 조」와 관련해 독자의 專使를 보내야 한다는 조건의 강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645년 7월의 경우 백제가 제공한 「임나의 조」進調 시에 있어서 백제사가 소위 「임나사」를 「兼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주의를 요하는 것은 그 중요한 「임나의 조」進調의식이 행해지는 場에 백제사의 大使는 비록 병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참가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종래의 통설적 이해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것이다. 즉 「임나의 조」납입에는 반드시 왜 궁정에서의 진조의식을 위한 독자의 「임나사」라는 專使의 존재를 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료a>의 推古紀 30년7월조와 同是歲條 및 同11월조의 이해가 다시 문제로 대두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해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즉 도대체 왜국의 사자들로 하여금 「是以任那之事, 今亦不成矣」라고 말하게 하고, 또한 당시의 大臣으로 하여금 「悔乎」라고 후회하게 한 그 진짜 원인·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왜 왕권이 대외정책으로 추진한 「임나의 조」정책에 있어 그 성공여부는 과연 무엇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당시의 大臣이 군사행동을 일으킨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왜 후회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소위 「임나사」의 문제와 「임나의 조」문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인 소위 「임나사」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우, 여기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앞서 본 鈴木설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임나의 조」에 있어서 「일정 관위를 가진 임나사」의 존재를 중시하여 왜국의 사자들이 「임나의 일」이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誣하게 만든 이유를 「임나사자」즉 「임나사」의 교대, 다름 아닌 奈末에서 大舎로의 교체 사실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임나의 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소위

「임나사」가 가진 관위에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임나의 조」와 관련한 「임나사」의 관위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카와 도키오(新川登龜男)씨의 연구¹⁸⁾에 의하면 推古朝를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신라 혹은 소위 임나로부터 왜 왕권에 파견된 사자의 관위는 각각 신라사의 경우는 奈末(신라17계 관위 중 제11위)이고, 소위 「임나사」의 경우는 大舎(同12위)가 그 기본 랭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되는 622년의 「임나의 조」의 경우 소위 「임나사」가 가진 관위 즉 사자가 교체된 후의 「大舎」라는 관위가 왜 왕권 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의 소위 「임나사」에 대해서는 신라 측이 애초에는 무언가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종래의 관례보다 관위가 한 단계 상위인 사자(「任那人達奈末」)를 왜국에 파견했으나 도중에 일어난 트러블(즉 왜 왕권의 출병)에 의해 사자의 관위를 원래의 관례대로 되돌린 것¹⁹⁾일 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나의 조」문제와 관련해 소위 「임나사」가 지닌 관위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해야만 할 귀중한 사례가 있다. 推古18년(610)과 19년(611)에 있었던 신라사와 소위 「임나사」來倭의 경우가 그것이다.

<사료c>

①추고기 18년7월조 및 동 10월조

秋七月, 新羅使人沙啄部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啄部大舎首智買, 到于筑紫.

冬十月己丑朔丙申, 新羅任那使人臻於京. 是日, 命額田部連比羅夫, 為迎新羅客莊馬之長. 以膳臣大伴為迎任那客莊馬之長. 即安置阿斗河辺館. 丁酉, 客等拜朝廷. 於是, 命秦造河勝·土部連菟, 為新羅導者. 以間人連塩蓋·阿閉臣大籠, 為任那導者. 共引以自南門入, 立于庭中. 時大伴咋連·蘇我豐浦蝦夷臣·坂本糠手

18) 新川登龜男(1994)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名著刊行会、p.102

19) 新川登龜男(1994), 전계서, p.102

臣·阿倍鳥子臣, 共自位起之, 進伏于庭. 於是, 兩國客等各再拜, 以奏使旨. 乃四大夫, 起進啓於大臣. 時大臣自位起, 立庁前而聽焉. 既而賜祿諸客. 各有差. 乙巳, 饗使人等於朝. 以河内漢直贄為新羅共食者. 錦織首久僧為任那共食者. 辛亥, 客等禮畢, 以歸焉.

②추고기19년8월조

秋八月, 新羅遣沙啄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 共朝貢.

이 사례에서 보면 사실 610년 7월(<사료①>)과 611년 8월(<사료②>)에 제공된 「임나의 조」의 경우 신라 측에서 사자로 파견한 것은 전자의 경우는 각각 新羅使人이 「奈末竹世土」·任那使人이 「大舍首智買」이고,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신라사가 「奈末北叱智」·임나사가 「大舍親智周智」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의 「임나사」는 종래의 관례대로 「大舍」의 관위를 가진 인물이 파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622년의 경우의 사자가 교체된 후에 보이는 「임나사」와 완전히 같은 신분의 사자인 것이다.

더욱 주의를 요하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10년과 611년의 경우 왜국의 조정 내에서 이들 「임나사」가 지닌 「大舍」라는 관위를 둘러싸고 특별히 외교문제가 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는커녕 특히 전자의 경우는 推古紀18년7월조 이하의 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히려 왜 왕권으로부터 당시 성립된 추고조의 賓禮²⁰⁾ 절차에 따라 크게 환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의 신라사와 소위 「임나사」가 받은 빈례의 내용은 608년에 來倭한 隋使 배세청의 경우(추고기16년조)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²¹⁾.

이상을 통해 「임나의 조」문제에 있어서 소위 「임나사」가 지닌 관위의 고저 자체가 결정적인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요컨대 「임나의 조」문제의 근원이나 트러블의 원인·이유를 사자의 교체, 즉 일정 관위를 지닌 專使의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를 또 다른 하나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20) 이 시기에 성립된 빈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田島公(1986) 「外交と儀禮」 『日本の古代7・まつりごとの展開』、中央公論社、pp. 207~215 참조.

21) 이에 대해서는 다자마(1986), 전계논문, pp. 213~215에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있다.

즉 西本씨의 所說처럼 소위 「임나사」 자체를 결한 상태에서 단지 調만의 貢上에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러한 해석 또한 그다지 타당한 이해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 622년의 「임나의 조」의 경우 신라에서 직접 파견된 사자의 來倭 없이 신라에서 귀국하는 왜 왕권의 遣新羅使에 부탁하여 신라 측이 단지 調만을 보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11월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신라에서 왜국으로 향했던 사자들이 도중에 전부 그냥 귀국해 버렸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우며 역시 신라 측이 파견한 사자들에 의해 일단 양국의 調가 제공되었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로, 상세하게는 별고에서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번 신라에서 왜 왕권으로의 견시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외교 목적을 띠고 파견되었다고 보인다는 점이다.

즉 이번 경우의 신라사는 신라의 새로운 대외전략에 기초하여 종래 왜 왕권이 고집해온 「임나의 조」 도입책이라는 대신라외교정책 자체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도록 하는 혹은 왜 왕권의 대신라정책 그 자체를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려고 기도하는 등 그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중요한 임무를 띠고 행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신라사의 파견을 계기로 신라 측의 왜 왕권에 대한 전례 없는 대대적인 외교공세, 즉 종래의 「임나의 조」를 매개로 하는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카드로서의 送使외교의 개시²²⁾, 왜국내의 백제불교 즉 흠명조에 단행된 백제 측의 불교공전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는 또 하나의 왜 왕권에 대한 신라불교 公傳의 시도²³⁾, 왜왕권내의 지배자층간에 발생한 외교논쟁의 야기²⁴⁾, 신라와의 交通을 전제로 하는 擘일 등을 통한 杼唐通交

22) 推古紀30년7월조. 이 때 처음으로 신라에 의한 소위 대외 송사외교가 개시된 점에 대해서는 田村円澄(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90 및 동(1980) 「送使外交」 『古代朝鮮仏教と日本仏教』, 吉川弘文館 참조.

23) 推古紀30년7월조. 이 신라 측이 단행한 불교공전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新川登龜男(1994)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 名著刊行会, pp. 99~104 참조.

에 관한 建言²⁵⁾, 심지어는 자국에 대한 출병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기도²⁶⁾가 계획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때, 622년에 신라 측이 제공한 「임나의 조」의 경우에 있어서 신라사가 직접 來倭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의 소위 「임나사」만이 來倭하지 않았다고 그 존재를 부정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是歲條와 7월조의 내용으로 보아 11월조가 전하는 기사내용의 신빙성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是歲條와 7월조에는 11월조와는 다르게 신라·임나라는 양국의 사자에 의해 「兩國之調」가 전해졌다고 보이고 있고, 또한 신라사와 함께 견당사 医惠日 등이 귀국하고 있는 일이나 신라사에 의해 각종 불교관련 문물이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신라로부터의 불교관련 물품의 제공을 전하는 7월조의 사실성은 이미 『일본서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다른 사료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기²⁷⁾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2점을 전제로 생각하면 鑿金 등 왜국의 사자로 하여금 「是以任那之事, 今亦不成矣」라고 말하게 만든 보다 직접적 요인은 결코 신라 측의 소위 「임나사」의 교대나 「임나사」자체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왕권 측의 「前期」의 위반 즉 대신라출병 등 무언가의 군사행동을 일으킨 행위 자체에 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이 推古紀30년是歲條와 同11월조에서는 결과적으로 왜국 측의 신라에 대한 무언가의 예기치 못한 군사적 행동에 의해 왜 왕권이 추진하는 「임나의 조」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신라로부터의 「임나의 조」도입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24) 推古紀30년시세조.

25) 推古紀30년7월조. 또한 医惠日에 의한 建言이 당의 의향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라 측의 의도도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시모다(1971) 전게서, p. 52 및 新川登龜男(1994), 전게서, p. 101 등 참조.

26) 전게 <사료 a> ③의 다) 참조. 아울러 이에 대한 사건은 별고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27) 이점에 대해서는 新川登龜男(1994), 전게서, pp. 99~101 참조.

그리고 이때에 있어서 실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라 측으로부터의 「임나의 조」進調·제공시에 갖춰야 할 일정 관위를 가진 專使의 不備나 「임나사」자체의 부재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환언하면 신라로부터의 「임나의 조」도입책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 즉 왜 왕권에 있어서 「임나의 조」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코 「임나사」의 관위문제나 사자의 來倭 유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왕권의 입장에서 「임나의 조」(정책)의 성립유무 즉 그 가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또 다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시 문제는 調 그 자체의 존재유무나 그 구성내용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1)이때 신라 측이 보낸 것은 「신라의 조」만으로 「임나의 조」자체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2)일단 「임나의 조」가 보내졌는데 그 구성내용 즉 물산의 구체적인 내용물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이 둘 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신라사·「임나사」의 來朝와 그들에 의한 각종 물품의 제공·전래를 전하는 7월조의 사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1)보다는 (2)의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임나의 조」 그 자체의 결여로 이해하기 보다는 「임나의 조」의 구성내용에 그 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라사와 「임나사」의 來倭와 그들에 의해 실제로 왜국에 증여·제공된 물건이 「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등의 불교관련 물품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2)의 경우라면 당시의 왜 왕권에 있어서는 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정책목표로 하는 「임나의 조」도입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이미 지배계층 상호간의 공통인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의 왜 왕권으로서는 「임나의 조」정책을 통해 얻고자 했던 물산이 적어도 불교관련 물품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점은 백제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임나의 조」의 내용물을 둘러싼 트러블²⁸⁾이나 혹은 皇極朝의 왜국에 있어서 백제·고구려로부터의 「調物」내용에 대한 檢分 사례²⁹⁾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우선 전자와 관련한 백제에 대한 詔에는 「而調有欠. 由是, 却還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라 하여 왜 왕권 측에서는 「임나의 조」의 유무와 그 내용물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를 통해서는 왜 왕권이 한반도제국에서 파견한 사절이 가져온 調物을 사전에 검사하고 있는 일이나 그 내용물에 대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제의 調에 대한 대응에서는 왜 왕권이 기대하는 調物의 내용 즉 백제에서 제공한 물·물산의 내용물(그 구성·품목·수량 등)이 미리 상정·예상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요컨대 첫째, 「임나의 조」문제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물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 또한 왜 왕권이 「임나의 조」정책에 의해 획득하고자 한 대상물이 적어도 불상 등 불교관련물품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임나의 조」정책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는 불교관련 이외에 별도의 품목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둘째, 이들 사실에서 역으로 「임나의 조」란 결국 신라를 통해 특정 물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IV. 결 어

지금까지 8세기 이전 일본고대국가의 형성·발전과정 및 고대 정치문화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왜 왕권의 대외교섭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테마이자 동시에 한일양국간 역사인식상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현안의 하나인 「임나의 조」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학계의 통설적 이해에 대한 비판작업의 일환으로서 「임

28) 孝德紀 大化元年七月条에 보이는 百濟王에 전해진 詔書.

29) 皇極紀 원년2월조에 「丁未, 遣諸大夫於難波郡, 檢高麗國所貢金銀等, 并其獻物.」이라 보이고, 동 2년7월조에는 「己酉朔辛亥, 遣數大夫於難波郡, 檢百濟國調與獻物. 於是, 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所還之色, 送群卿物, 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라 보이고 있다. 특히 후자를 통해서는 왜 왕권이 기대하는 調物의 내용, 즉 백제에서 제공된·物·物産의 구체적 내용(그 構成·品目·數量 등)이 사전에 전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조」의 사적 의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임나사」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여 이해해 온 일본학계의 통설 및 신설의 문제점을 관련사료인 추고기30년 각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그 가부를 검토해 보았다.

말할 나위도 없이 종래 일본학계에서 「임나의 조」문제를 무엇보다도 「임나사」와의 관련을 중시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시모다씨의 학설이 발휘하는 영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씨가 1960-70년대에 걸쳐 제시한 소위 「동이의 소재국·소중화」론에 입각해 일본고대국가의 특질 및 왜 왕권의 대외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외관계사 방면에 있어서 주류를 점하는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 이시가미 에이치(石上英一),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등 제씨의 연구에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³⁰⁾.

그러나, 본고의 검토결과 「임나사」의 존재를 전제로 「임나의 조」의 사적 의의를 추구해온 종래의 이시모다설에 기초한 일본학계의 이해방식은 사료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말하자면 사상누각과 같은 취약한 토대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금후의 「임나의 조」에 관한 이해는 종래의 일본학계와는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임나사」의 존재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의례적 측면에서의 이해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調」라는 『일본서기』편자의 의식이 투영된 어구 즉 8세기 이후에 성립하는 율령용어에 지나치게 구애되거나 구속되어서도 결코 「임나의 조」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金鉉球(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pp.241~255
 羅幸柱(2005)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任那問題와 韓日關係』, 韓日關係史研究論集 3, 景仁文化社, pp.48~67
 羅幸柱(2008a) 「신라와 ‘임나의 조’—신라 측에서 본 종래설 비판—」 『韓日關係史研究』 29, pp.3~67
 羅幸柱(2008b) 「「임나의 조」의 실체와 의미」 『日本歷史研究』27, pp.179~219
 이재석(2006) 「일본고대국가의 자화상과 타자상」 『日本歷史研究』24, pp.5~28

30)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2008a), pp. 12~14를 참조.

- 延敏洙(1998) 「일본서기의 ‘임나의 조’ 관계기사의 검토」 『古代韓日關係史』혜안(초출은 1992), pp.309~322
- 鄭孝雲(1995) 「임나의 조」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學研文化社, pp.110~120
- 石母田正(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후에 『石母田正著作集』第3卷, 岩波書店, 1989에 수록), pp.47~57
- 石上英一(1987)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第1卷, 岩波書店, pp.82~90
- 新川登龜男(1994)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 名著刊行會, pp.91~108
- 末松保和(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pp.189~196
- 鈴木英夫(1996)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초출은 1983), pp.236~243
- 鈴木靖民(1984)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講座日本歴史』1, 東京大學出版會, pp.228~230
- 田島公(1986) 「外交と儀禮」 『日本の古代7・まつりごとの展開』, 中央公論社, pp.207~216
- 田村圓澄(1980) 「新羅送使」 『古代朝鮮仏教と日本仏教』, 吉川弘文館, pp.108~112
- 西本昌弘(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129, pp.3~10
- 三品彰英(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pp.79~81
- 森公章(2002) 「倭國から日本へ」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pp.30~31
- 森公章(1998) 『白村江以後』, 講談社, pp.68~70
- 山尾幸久(1989) 「『任那の調』の實態と性質」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pp.328~349

- ❖ 투고일 : 2009. 1. 10
- ❖ 심사일 : 2009. 2. 6
- ❖ 심사완료일 : 2009. 2. 10